

1997. 10.

'97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

총 무 위 원 회

# '97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. 10. 23. 충주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7. 10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7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

○ 제1차 위원회('97. 10. 29.) 상정, 질의·답변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창고신축부지 취득에 대한 '97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○위치 : 충주시 금능동 134-4 외 11필지

○규모 : 7,030㎡ 정도

○재산가액 : 475,018천 원

\*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시 변동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신청사의 부지 협소로 각종창고 신축이 어려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창고 신축부지를 신청사 뒷면 금동동 134-4의 11필지 7,030㎡ 정도를 매입하려고 하는바
- 이는 재산증식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나 다음 사항은 검토되어야 할 것임.
  - 신청사 부지내에 창고를 신축할 공간이 없는지?
  - 구목계지서 및 성파부지, 칠금동 청사 매각대금으로만 매입이 가능한지와 부족 하다면 충당 재원은?
  -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수 없으므로 취득물건의 사권 설정여부
- 따라서 본 '97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질의·답변을 들은후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답변요지

#### ( 질의 )

- 당초 신청사 신축시 창고신축 계획등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와 청사부지내 테니스장 등에 창고신축 방안은?

#### ▣ 답변

- 테니스장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.

#### ( 질의 )

- 사유자 매입시 창고신축 계획 및 재원 충당 계획은?

## ▣ 답변

○ 창고 165평, 차고 295평 신축 예정이며 대형차 3대와 화물차 등을 보관할 계획임.  
재원 약 8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목계지서 및 구성파 부지, 구월금동 청사 매각  
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임.

## 5. 심사결과

### ○ 원안가결

## 6. 별첨

### ○ '97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(별지 제13호 서식의 7-1)

## 공(시)유재산 관리 계획서

97년도 관리계획 종합표

(단위:m<sup>2</sup>,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계			비 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토지 건물 기타				1	7,030	475,018	1	7,030	475,018	
	1. 매 입	토지 건물 기타				1	7,030	475,018	1	7,030	475,018	
	2. 교환으로 취 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처 분	3. 기타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4. 매 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6. 교환으로 처 분	5. 양 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허가 및 대 부	합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